

보 도 자 료

- 제공일 : 2004. 6. 4
- 제공자 : 농림부 개발정책과
- 과 장 : 나 승 렬
- 사무관 : 송 남 근
- 전 화 : 500-1955

이 자료는 2004년 6월 5일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

-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실현을 목표로 하는 [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]시행('04.6.6)

< 보 도 요 지 >

-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「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(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)」이 6월 6일부터 시행
 - ① 정부는 매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·교육·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「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」을 수립
 - ②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인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촌의 복지·교육·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총괄·조정하여 추진
 - 연금·건강보험료 지원 등 농림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삶의질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
 -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·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
 - 주택, 도로, 상수도,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개선을 적극 지원
- 삶의질향상특별법의 시행으로 농어촌 복지·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되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

□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「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(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)」이 6월 6일부터 시행된다.

- 농업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복지, 교육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다.

□ 이번에 시행되는 삶의질향상특별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정부는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,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어촌 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·교육·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「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」(이하 기본계획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 수립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한다.
 -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농작업 또는 어로 작업 중 부상,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.
 - 또한 10년간 연장되는 20조원의 농특세는 농어촌 복지, 교육과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.

③ 그리고 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·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·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농어촌 학생에 대한 학비,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

- 농어촌 학교에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,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편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의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, 도로, 상수도, 대중교통체계 등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-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, 농어촌 경관의 보전과 형성, 향토산업의 진흥,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이와 같이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형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,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뿐만아니라, 농어촌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앞으로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.

< 참고 1 >

특별법 제정 배경

- 그동안 농정은 가격지지 등 농업위주의 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, WTO체제의 출범으로 가격지지가 계속 축소됨에 따라
 - 농업인들은 농업소득의 정체는 물론, 농촌의 농외소득원 취약으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의 한계에 직면, DDA 이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
- 한편, 농어촌 교육·복지·지역개발 문제는 “지역”을 바탕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종합적·체계적 접근이 필요
 -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나 그동안 농특세 등의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
 - * 농특세 중 35%만 농어촌 복지 및 생활환경에 투자('94~'03)
 - 복지 등 농어촌 정책의 부처별 분산 추진 및 농어촌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도농간 복지여건 및 생활환경 격차가 확대
 - 젊은층의 이농과 고령화 심화로 농촌사회 활력 유지가 곤란
 - 농어촌에 복지·교육 등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지역불균형, 국민통합 저해 등의 문제가 심화될 전망
- DDA 이후 농어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정책을 농정의 영역안에 적극 수용, 농특세를 복지·지역개발 등에 집중 투입하여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틀 마련 필요

◇ 낙후된 농어촌 생활여건의 개선을 통한 도·농간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

< 참고 2 >

